



논산을 새롭게  
시민을 행복하게

의안번호

제219호

##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월일	2023. 11. 15.

#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219호
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11. 15.  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  
제안설명자 : 복지정책과장

## 1. 개정이유

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관련사항을 정비하고,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, 사망위로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제정
- 나. 지원사업에 ‘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’ 조항을 신설 (안 제4조제4호)
- 다. 결손처분 관련 조항 삭제 (안 제10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- 다. 기타사항
  - 1) 부패영향평가: 원안 동의[기획감사실-11366호(2023. 10. 24.)]
  - 2)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[복지정책과-31304호(2023. 10. 17.)]
  - 3) 규제심사: 규제심사 대상 아님[예산실-11936호(2023. 10. 13.)]

4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3.10.11. ~ 2023.10.31. 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5) 비용추계서: 해당없음

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경로보훈과(041-635-4219)

## 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#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국가보훈처”를 “국가보훈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위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위하여”로 한다.

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30만원 지급”을 “지급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복지수당 월 10만원”을 “복지수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참전명예수당 지급

4.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) ①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
1. 사망한 경우
2. 국적을 상실한 경우
3. 법 제38조제2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
4.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경우
5. 논산시에서 전출하는 경우
6.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

②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

1.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
2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

제11조를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각각 삭제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국가보훈처”를 “국가보훈부”로 한다.

제4조 단서 중 “국가보훈처장”을 “국가보훈부장관”으로 한다.

②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국가보훈처”를 “국가보훈부”로 한다.

③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국가보훈처장”을 “국가보훈부장관”으로, “한다)”를 “한다)””로 한다.

제6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국가보훈처”를 “국가보훈부”로 한다.

소	관	부	서	성	명
입 안 자	복 지 정 책 과 장			정	경 옥
	복 지 보 훈 팀 장			김	명 중
	담 당 자			이 주 연 (746-5345)	



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참전명예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 월 20만원 지급
2.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
3.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지급

<신 설>

제5조(수당) ① 수당은 제3조 및 제4조제1호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,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서를 주소지 읍·면·동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초생활수급자 등 본인의 사정에 의해 참전명예수당의 수령을 거부하는 참전유공자에게는 지급하지

-----  
-----  
--.

1. 참전명예수당 지급
2. ----- 지급
3. ----- 복지수당 -----  
--

4.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<삭 제>



아니한다.

②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임을 받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.

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읍·면·동장과 수당지급 대상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수당은 65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 중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

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.

제6조(사망위로금) ① 사망위로금

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읍·면·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사망위로금의 신청은 사망자의 유족,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, 장제를 행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.

제7조(지급시기 등) ① 수당은 매

월 말일에 수당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친족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② 사망위로금은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

<삭 제>

<삭 제>

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.

제8조(신상변동의 신고 등) ① 수

<삭 제>

당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 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
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 
또는 가족은 그 사실을 별지 제  
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를  
주소지 읍·면·동장을 거쳐 시  
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.

1. 사망한 때

2. 법 제38조제2항 또는 법 제39  
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

3. 국적을 상실한 때

4.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 
이 된 때

5.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던 사  
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 
때

6. 성명·주소·생년월일의 변  
동이 있는 때

7. 참전 및 군 기록 등에 관한  
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 
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 
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, 신고  
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

하여야 한다.

1. 등록취소 및 수당지급의 중지

2. 미지급 수당의 지급 또는 지급된 수당의 환수

③ 수당지급대상자가 제1항에 의한 신상변동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신분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읍·면·동장은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수당지급 중지요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급대상자의 관리) ①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읍·면·동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·관리대장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읍·면·동장은 수당지급대상 등록신청서 및 위임장(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), 수당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(별지 제4호서식)를 접수하여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③ 읍·면·동장은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(별지 제3호서식)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)

① 시장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
②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 또는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.

제10조(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)

①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
1. 사망한 경우
2. 국적을 상실한 경우
3. 법 제38조제2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
4.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경우
5. 논산시에서 전출하는 경우
6.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

②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

1.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
2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



[별지 제2호 서식] (제5조제2항 관련) <개정 2022.10.31.>

참견등록번호		-		-								참견유공자 성명
참견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위 임 장												
위임받은 자	성명							생년월일				
	주소											
	위임자와의 관계							위임사유				
<p>「논산시 참견유공자 지원 조례」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견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.</p> <p>년 월 일</p> <p>위임자 성명 : (인)</p> <p>주소 :</p> <p>생년월일 :</p> <p>논 산 시 장 귀하</p>												

<삭 제>

[별지 제3호 서식] (제6조제1항 관련)

참견등록번호		-		-								
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												
참견유공자	성명							생년월일				
	주소	전화(핸드폰):										
	사망일자	년 월 일										
신청인	성명							생년월일				
	주소	(전화 : )										
	참견유공자와의 관계	예금주 계좌번호			금융기관							
<p>「논산시 참견유공자 지원 조례」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참견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.</p> <p>년 월 일</p> <p>신청인 : (서명 또는 날인)</p> <p>논 산 시 장 귀하</p>												
<p>&lt;구비서류&gt; 1.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                2.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                3. 사망자와 정황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             (진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)                  4. 경계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(경계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)                  5. 신청인의 예금통장(계좌번호가 표시된 면) 사본 1통                  ※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.</p>												
<p>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/p> <p>신청인(대표자) : (서명 또는 날인)</p>												

<삭 제>

[별지 제4호 서식](제8조제1항 관련)

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			
참전등록번호	성명	생년월일	주소
(전화 : )			
변동내역	구분	해당란에 표시	사유발생 및 소멸일자
	사망	<input type="checkbox"/>	
	「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	<input type="checkbox"/>	
	국격상실	<input type="checkbox"/>	
	1년 이상 행방불명 또는 행방불명 사유소멸	<input type="checkbox"/>	
기타		변동전	변동후
군 기록 등의 변경·정정			
주소, 성명, 생년월일			
<p>「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」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>신고인 성명 : (서명 또는 날인)</p> <p>주소 :</p> <p>생년월일 :</p> <p>(참전유공자와의 관계 : )</p> <p>논 산 시 장 귀하</p>			
구비서류 : 변동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		

<삭 제>

[별지 제5호서식](제9조제1항 관련)<개정 2022.10.31.>

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등록·관리대장  
(읍·면·동)

번호	성명	생년월일	주소	수당지급계좌		수당지급계시		수당지급종단		참정등록번호	비고
				금융기관	계좌번호	등록신청일	최초수당지급월	수당지급종단월	종단사유		

<삭 제>



**붙임 1**

**비용추계서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**

1.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조문

○ 해당없음

2. 비용 추계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해당없음

나. 추계 결과

○ 해당없음

3. 작성자

복지정책과장 정 경 옥

**□ 「지방자치법」**

**제28조(조례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**□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**

**제4조(국가 등의 책무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
2.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
3.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
4. 6·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